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施行規則中 改正令

◎재무부령제998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1973년 12월 28일

재무부장관 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다음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삽입한다.

제 2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 조의 2 (특수건물 시가결정방법) ①법 제 8 조 제 1 항제 1 호에 규정된 특수건물의 시가는 별표의 특수건물 시가 결정기준액표(이하 “기준액표”라 한다)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에 규정된 기준액표에 의하여 특수건물의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설계의요령, 건축자재의 우열·시공방법의 차등, 지역차·용도·사용기간에 따르는 감가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이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제 2 항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특수건물의 시가를 가감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특수건물시가조사회(이하 “조사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④조사회는 재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건축

사 1인

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건축전문

가 1인

다. 한국감정원 원장이 추천하는 감정전문가

1인

라. 기타 보험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

부한자 2인

⑤조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수건물시가(평당가액) 결정기준액표

급별	요항 구조별	직업별	사 무 소		
			10층이상 연면적 5000m ² 이상	6층이상 10층이하 연면적 1000m ² 이상 500m ² 이하	6층이하 1000m ² 이하
1	다음 각호의 구조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지붕바닥 기둥 및 층계가 모두 내화구조이며 처마, 차양, 물딩, 그 밖의 건물의 돌출부 및 외벽의 모든 개구부가 불연재료로 구성되거나 피복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	1)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벽두께 12cm 이상	185,300	154,200	13,500
		2) 철골콘크리트조 벽두께 12cm 이상	169,800	141,400	104,900
		3) 철근콘크리트조 벽두께 12cm 이상	154,400	128,500	95,400
		4) 철근콘크리트 부르크조 벽두께 20cm 이상			80,000
		5) 벽돌조, 석조, 무근콘크리트조 벽두께 30cm 이상			75,000
2	다음 각호의 구조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지붕은 불연재료이고 처마, 차양, 물딩 및 그 밖의 건물의 돌출부가 불연재료로 구성되거나 피복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	1)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벽두께 12cm 이상	168,200	140,000	104,000
		2) 철골 콘크리트조 벽두께 12cm 이상	152,900	127,300	94,500
		3) 철근 콘크리트조 벽두께 12cm 이상	139,000	115,700	85,900
		4) 철근콘크리트 부르크조 벽두께 15cm 이상			75,000
		5) 벽돌조, 석조, 무근 콘크리트조 벽두께 20cm 이상			75,000
3	다음 각호의 구조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지붕을 불연재료로 이은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	1) 철골 금속판 불임조			70,000
		2) 철골, 석면반, 불임조 철골, 유리 불임조			70,000
		3) 콘크리트조, 벽돌조, 부르크조			70,000
		4) 벽돌 불임조			65,000
		5) 흙벽조			60,000
		6) 조립식콘크리트조 경량콘크리트조			70,000
		7) 2급 구조 건물로서 소정의 규정에 미달하는 것			60,000
4	건물의 구조와 조건이 3급에 미달하는 것. 다만 지붕을 가연재료로서 이은 것은 지붕 활증을 부가한다.			60,000	

[별표 2]

호			아			패		트		시		강	
철대수 300 이상 10층	철대수 150 이상 300이하 6층~10층	철대수 150 이하 지상 6층	1세대당 건평 100m ² 이상 1층당 10세대 이상	1세대당 건평 50m ² 이상 1층당 10세대 이상	1세대당 건평 50m ² 이하 1층당 10세대 이상	5층 이상 면적 5000m ² 이상	5층 이하 면적 5000m ² 이하	3층 이상 면적 10,000m ² 이상	3층 이하 면적 10,000m ² 이하				
230,300	202,800	140,000	200,300	158,600	94,400	199,700	157,100	121,200	99,400				
211,100	171,600	128,400	169,500	145,400	86,600	183,000	144,000	110,100	91,100				
191,900	156,000	116,700	154,100	132,200	78,700	166,400	130,900	101,000	82,800				
		95,000					105,000	80,000	65,000				
		90,000					100,000	75,000	60,000				
197,200	168,400	126,000	166,400	142,800	113,300	179,800	141,400	109,100	89,400				
190,000	154,400	115,500	152,600	130,900	103,800	164,800	129,600	100,000	82,000				
172,700	140,400	105,000	138,700	119,000	94,400	149,800	117,300	90,900	74,500				
		90,000					100,000	80,000	70,000				
		85,000					95,000	75,000	65,000				
		80,000					90,000		60,000				
		80,000					90,000		60,000				
		80,000					90,000		60,000				
		75,000					85,000		55,000				
		70,000					80,000		50,000				
		80,000					90,000		60,000				
		70,000					70,000		60,000				
		70,000					70,000		60,000				
		70,000					70,000		60,000				
		70,000					70,000		60,000				

[별표 3]

별 원			체육관	극장	강당	요리점	학 교		방송국	카바레·파	촬영소
10층이상 5,000m ² 이 상	3~10층 1,500~ 5,000m ²	3층이하 1,500m ² 이하					5층이상 3,000m ² 이상	5층이하 3,000m ² 이하			
216,500	167,000	116,400	139,400	310,000	143,200	144,100	139,600	110,400		148,300	253,000
198,400	153,100	107,600	127,800	284,200	131,200	132,100	127,900	101,200		136,000	231,900
180,400	139,200	97,800	116,200	258,400	119,300	120,100	116,300	92,000		123,600	210,800
		80,000	95,000		95,000	100,000	95,000	80,000		100,000	170,000
		75,000	90,000		90,000	95,000	90,000	75,000		95,000	150,000
194,900	150,400	105,600	125,500	279,100	128,900	129,700	125,600	99,400		133,400	227,600
178,600	137,800	96,800	115,100	255,900	118,100	118,900	115,200	91,100		122,300	208,700
162,400	125,300	88,000	104,600	232,600	107,400	108,100	104,700	82,800		111,200	189,700
140,000	110,000	80,000	95,000		100,000	100,000	95,000	80,000		100,000	170,000
135,000	105,000	75,000	90,000		90,000	95,000	90,000	75,000		95,000	150,000
	100,000	70,000	85,000		85,000	90,000	85,000	70,000		90,000	145,000
	100,000	70,000	85,000		85,000	90,000	85,000	70,000		90,000	145,000
	100,000	70,000	85,000		85,000	90,000	85,000	70,000		90,000	145,000
	95,000	65,000	80,000		80,000	85,000	80,000	65,000		85,000	140,000
	90,000	60,000	75,000		70,000	75,000	70,000	60,000		80,000	130,000
	100,000	70,000	85,000		85,000	90,000	85,000	70,000		90,000	145,000
	80,000		65,000		65,000	70,000	65,000	60,000		70,000	120,000
	80,000		65,000		65,000	70,000	65,000	60,000		70,000	120,000